

Legislative & Policy Weekly

세종Law Focus

주간 입법·정책 동향

Vol.253 | 2024.09.23 (2024.09.09~09.22)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2. 입법(행정)예고 법안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09~09.22)

Contact: 백대용 변호사(파트너)

02-316-4630, 010-3248-5382
dybaek@shinkim.com

Summary

【정부의 주요 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하는 한편,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현행 대부업법은 '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신변종 불사금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15년에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진입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구제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보다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입법(행정)예고】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등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제작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등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당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업계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법률 발의 및 제출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며,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동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우리나라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의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탄소세법안(용혜인의원 등 12인)**」,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의원 등 10인)」 ,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의원 등 12인)」 ,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개선하여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의원 등 14인)」 ,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의원 등 11인)」 ,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지역·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지역·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하려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의원 등 10인)」 ,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의원 등 10인)」 ,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하는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 · 손명수의원 등 16인)**」 등이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국회의사일정(안)】

9/26(목) **안전 심의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10/7(월)부터 실시되는 2024년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각 상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목 차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바로가기](#)

-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장지를 위한 입법방향」 발표(공정거래위원회) 9
-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10
-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방안」 발표(금융위원회) 12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 발표(개인정보보호위원회) 13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바로가기](#)

- 민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15
- 상법 일부개정법률(법무부) 15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5
-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6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기획재정부) 16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중소벤처기업부) 16
-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환경부) 17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7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 17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8
-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해양수산부) 18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9
-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금융위원회) 19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금융위원회) 21

2. 입법(행정)예고 법안

[바로가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2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2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3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기획재정부) 23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문화체육관광부) 23
-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산업통상자원부) 25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국토교통부) 25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25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해양수산부) 26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식품의약품안전처) 28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바로가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	29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3인) ·····	29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	30
•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4인) ·····	30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	31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등 14인) ·····	3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	3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33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의원 등 10인) ·····	3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2인) ·····	34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1인) ·····	34
• 탄소세법안(용혜인의원 등 12인) ·····	35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	36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0인) ·····	37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	37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	3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	38
•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	38
•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	39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의원 등 12인) ·····	41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	42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	43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1인) ·····	44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	44
•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	45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	45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	46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	46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	47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	4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	48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 신장식의원 · 이용우의원 등 12인) ·····	4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	49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6인) ·····	50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의원 등 17인) ·····	51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1인) ·····	52
•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	52
•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5인) ·····	53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	53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54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 윤종균의원 등 24인) 55
-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55
-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 · 손명수의원 등 16인) 56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바로가기](#)

1. 본회의
2. 상임(특별)위원회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바로가기](#)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09~09.22) [바로가기](#)

-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2.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TNFD 핵심 가이드
- **[에너지·자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 **[환경]**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더욱 강화된 기후대책 예고
-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 (2024년 9월 2째주)
-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기둥 2개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I. 정부 주요 정책 동향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장지를 위한 입법방향」 발표 - 당정협의 거쳐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제도개선 방안 발표 -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개정 - 갑을 분야(플랫폼 입점업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2024-09-09
-------	--	------------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방지 입법방향」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의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 추진방향을 발표했음. 공정위는 이미 관계부처 협의 등이 완료된 「공정거래법」 개정 관련 내용의 경우 국회와 법안 발의를 신속히 협의할 예정이며, 복수안을 검토 중인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중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힘

주요 내용으로는

① 독과점 분야(플랫폼 경쟁촉진): 「공정거래법」 개정

- 플랫폼 독과점 분야에서는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시장의 경쟁질서를 보호할 계획
- 규율대상은 시장 영향력이 압도적인 지배적 플랫폼이며, 이는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특정할 예정
- 당초 ‘사전 지정’ 방침을 발표했으나, 업계·전문가·관계부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하여 ‘사후 추정’으로 변경
- 구체적 추정요건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보다 강화하여 독점력이 공고한 경우로 한정하되, 스타트업 등의 규제부담 등 우려를 고려하여 연간 매출액 4조원 미만 플랫폼은 제외할 계획
- 규율분야와 내용은 ▲중개, ▲검색, ▲동영상, ▲SNS, ▲운영체제, ▲광고 등 6개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경쟁행위를 금지할 계획
- 지배적 플랫폼의 영향력에 상응하는 강화된 입증책임을 부여하되, 경쟁제한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한 항변권은 충분히 보장
- 적발된 반경쟁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는 과징금 상한을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관련 매출액의 6%)보다 상향(8%)하고, 반경쟁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임시중지명령 제도도 도입

② 갑을 분야(플랫폼-입점업체):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갑을 분야에서는 필요한 제도 보완을 통해 경제적 약자인 을(乙) 사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
- 티몬·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되, 규제강화 필요성과 중소기업 플랫폼의 혁신·성장 저해 우려를 종합 고려하여 규율 대상 및 내용에 있어 복수안을 마련
-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에 재화·용역 거래를 중개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 구체적인 규율대상 플랫폼의 규모는 ▲(1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백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천억원 이상, ▲(2안)연간 중개거래수익 1천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의 사업자 중에서 추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계획

- 규율대상 플랫폼에 대해서는 ▲정산기한 준수 및 ▲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규율 중 거래관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사항도 적용
- 정산기한은 전통 소매업(특약매입 등)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전통 소매업 정산 기한(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보다 단축하되, ▲(1안)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한 만료일)로부터 10일에서 20일 이내, ▲(2안)월 판매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 중에서 결정할 계획
- 플랫폼이 판매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수수료 등을 제외한 판매대금의 ▲(1안)100% 또는 ▲(2안)50%를 별도관리(예치, 지급보증 등)하도록 의무화
-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유통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조항 중 온라인 중개 거래에 적용 가능한 사항도 준용할 계획

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 **(국민 경각심 강화)** 미등록대부업자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 불사금 주의·안내 강화, 불사금에 이용된 대포폰을 차단·처벌
- **(대부중개사이트 규율 강화)** 대부중개사이트의 ‘지자체 → 금융위’ 등록의무 상향,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 강화, 불사금 이용목적 개인정보유통 처벌
- **(지자체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 강화 및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제한
- **(불법대부 처벌·제재 강화)** 불법대부업 처벌 강화, 과태료 기준 상향, 불사금업자의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전자금융거래 제한 제도 도입
- **(불법대부계약 효력 제한)** 성착취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 근거 마련, 불사금업자 수취이자 제한 (20%→6%)
- **(대부업 전반 규제 합리화)**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 및 재진입 제한 강화, 지자체 대부업자 자산한도 규제도입 및 우수대부업자에 대한 자산한도 규제완화 등

2024-09-11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하였음

현행 대부업법은 '02년 제정 당시 대부업 양성화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제재·처벌 수준이 낮고 신변종 불사금 피해사례 예방과 구제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부업 영업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울러, '15년에 대부업 진입규제 강화와 등록제도 개편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낮은 진입요건으로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과 불법영업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그동안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TF」를 통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대한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채무자대리인 제도,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음. 금융당국은 이러한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피해구제 지원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사금융을 보다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대부업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밝혔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하여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미등록 대부업자 명칭변경 등을 추진

- 대부업법상 등록 없이 불법 대부업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현행 ‘미등록 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는 한편,
-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 안내할 예정
- 불법대부·불법채권추심 목적으로 대포폰을 개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

②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로 작용하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 대부중개사이트의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금감원 위탁)로 상향하고 「금소법」상 대출비교플랫폼 수준의 인적·물적요건과 정보보호체계를 갖추도록 의무화
- 대부업자와 대부중개업자가 취득한 개인정보를 대부제공·중개 목적 外로 사용(예: 개인정보 판매 등)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에 더해 누구든지 불사금 등 범죄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개인정보를 제공·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금지

③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

- 지자체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상향하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쪼개기 등록방지를 위해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등도 제한
- 지자체의 내실있는 감독을 위해 현장실태감사(현재 연 1회), 담당자 교육(현재 연 1회) 등도 강화해 나갈 계획

④ 불법대부행위에 대한 처벌·제재 수준도 상향

- 불법사금융업자의 최고금리 위반, 미등록 영업, 정부·금융기관 사칭 등에 대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대부업법상 허위상호·허위계약 기재 등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상향
-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 위반시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를 마련
- 불법사금융업자의 반복적인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불사금 목적 계좌개설 제한, 불사금 범죄로 유죄 판결 선고 사실 확인시 전자금융거래 제한 근거도 마련

⑤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고 불법사금융 범죄 이득을 박탈하기 위한 근거 마련도 추진

- 성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원인으로 대부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을 무효로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시 수취 가능한 이자를 현행 20%(대부업 최고금리 준용)에서 6%(상법상 상사법정이자율* 준용)로 제한

⑥ 부적격 대부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적격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운영 → 퇴출 → 재진입” 전반에 걸쳐 규제를 정비

- 등록요건 미충족 대부업자에 대한 시·도지사,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직권말소 권한을 부여하여 부적격자는 즉시 퇴출하고, 자진 폐업시 재등록 금지 기간도 확대(1년→3년)하여 부적격자의 대부업 재진입 차단도 강화
- 서민금융 공급 장려를 위해 “우수대부업자” 지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만 대상으로 적용중인 총 자산한도 규제를 지자체 대부업자도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우수대부업자의 총 자산한도는 상향 조정

금융위원회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 제도개선방안」 발표

-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 도입
-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미준수시 조치근거 마련

2024-09-09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협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티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함

- 지급결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
- 별도관리는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별도관리 방식 등을 계약 체결시 판매자에게 고지하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
- 다만, 별도관리 의무 도입시 규제준수부담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과기간(예시 :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을 부여할 계획
-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하는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하며, 우선변제권을 도입하여 PG사의 파산시에도 정산자금 안전하게 보호

② PG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

-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
-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에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제재·처벌하고, PG사의 거래규모에 비례하여 자본금 규모의 상향도 추진
- e-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서 대금을 수취하여 내부 정산을 해주는 경우는 PG업에 해당되지 않도록 PG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

발표

2024-09-12

- 기존 인터넷망 차단조치 개선으로 개인정보처리자별 위험분석
결과에 따라 위험수준별 차등 보호대책 적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데이터 가명화, 암호화 등 개인정보 유출 방지와 불법 접근 차단을 위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적용한 경우, 인공지능이나 클라우드 등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마케팅 목적의 데이터 분석과 연구개발을 위한 외부 분석 도구(SaaS 형태 등)의 활용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인터넷망 차단 수준을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됨.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는 과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 조치의 하나로써 도입되었으나,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인공지능·클라우드와 같은 인터넷 기반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였고, 일률적인 인터넷망 차단조치로 인해 혁신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개인정보위는 인터넷망 차단조치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그동안 업계전문가로 구성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논의를 이어온 결과 인터넷망을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고, 인터넷을 활용해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위험도에 따른 차단수준 차등 적용,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한 보호수준 저하 방지, 개인정보처리자 지원 강화 등 3대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음**

주요 내용으로는

① **위험도에 따라 인터넷망 차단수준을 차등적으로 적용**

- 현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상 개인정보 다운로드·파기를 하거나 개인정보의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에 대해 인터넷망 차단이 의무화
- 앞으로는 차단 대상 컴퓨터 등의 위험분석을 통해 취급자 컴퓨터 등을 3단계로 구분하고, 차단수준을 차등 적용할 예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내부관리계획에 따라 위험분석을 거쳐 위험수준을 구분해 저위험·중위험 컴퓨터 등에 대하여 인터넷망 차단조치 이외에 이와 상응하는 보호조치 하에서 제한된 인터넷망 접속도 허용하도록 완화할 방침

<위험수준별 개인정보취급자 컴퓨터 등 구분(안)>

위험수준	대상	예시	차단수준
① 저위험 (Low risk)	제한된 다운로드	소량, 마스크, 안심번호 등	-
② 중위험 (Medium risk)	일반 다운로드 또는 파기	가명·암호화 처리된 개인정보 등	인터넷망 차단 또는 상응 보호조치
③ 고위험 (High risk)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 설정	접근권한 설정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 책임자의 컴퓨터 등	현행유지

= 개인정보처리자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자체 위험분석(저·중위험 컴퓨터 등 대상 설정)

- 위험수준(저·중·고) 기준과 상응하는 보호조치 등을 구체화 하여 필요한 부분을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반영할 예정
- 다만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고위험 컴퓨터 등은 탈취 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되므로, 기존과 같이 인터넷망 차단조치 의무를 유지할 계획

②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

-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자 스스로가 책임 강화를 통해 보호수준 저하를 방지
- 처리자 스스로 컴퓨터 등과 취급자 현황과 위치, 취급 개인정보의 민감도 등 분석을 통해 적절한 보안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수립한 보안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보완 사항에 대해 주기적으로 재평가·보완조치를 하도록 권고해 나갈 예정

③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

- 개인정보처리자가 인터넷망 차단조치 완화에 따른 보안 조치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입체적인 지원을 강화할 예정
- 기술지원 전담반을 구성하여, 상응 보호조치 적용을 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해 현황진단, 애로 상담 등 맞춤형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 사업자가 적용할 상응 보호조치가 인터넷망 차단조치에 상응하는 조치인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불확실성을 제거할 예정

II. 입법(안) 동향

1. 공포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내용	시행일자
법무부	민법 일부개정법률	2025-01-31 시행 예정

현재는 법인의 주사무소 등기부와 별도로 분사무소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분사무소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등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상속권의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국민 정서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상속제도를 개선함

법무부	상법 일부개정법률	2025-01-31 시행 예정
-----	------------------	------------------

현재는 회사의 본점 등기부와 별도로 지점 등기부를 두고 있어 신청인이 지점의 소재지에서 추가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고 각 등기부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회사의 지점 등기부를 폐지하고 회사의 본점 소재지에서만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의 불일치를 방지하고 등기신청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회사가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 소재지 또는 새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고, 지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새 소재지와 이전 연월일을 등기하도록 하여 등기절차를 간소화하며,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설치하는 경우 등기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전문용어나 잘 쓰지 않는 한자어 등 현행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10 시행
-------	-----------------------	---------------

외국 상장주식 등에 대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간 과세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집합투자기구(펀드)가 외국 상장주식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 지수를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의 주식·수익증권, 상장지수증권(ETN) 또는 이를 기반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 등의 거래 또는 평가손익을 집합투자기구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하는 한편,**

도시형 생활주택의 원활한 공급으로 청년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 신축주택의 범위에 도시형 생활주택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024-09-10 시행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매매하기 전에 임대한 경우에도 해당 주택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27 시행 예정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자가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면받은 경우에는 국가계약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401호, 2024. 3. 26. 공포, 9. 27. 시행)됨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계약 불이행 상황 발생 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경우 등에는 둘 이상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사실을 자진신고하여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과징금의 감경 비율만큼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간을 감경하거나 제한처분을 면제하도록 하려는 것임**

중소벤처기업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2024-12-21 시행 예정

수탁기업이 기술자료 유용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탁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및 구제를 강화함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

2025-03-21 시행 예정

시멘트를 제조하는 자가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한 경우에는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20 시행

국토교통부장관이 연속지적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적소관청은 지적도·임야도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토지의 이동 또는 오류사항을 정비한 때에는 이를 연속지적도에 반영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 기술지원, 표준화 및 고도화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연속지적도의 관리·정비 업무 및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한국국토정보공사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측량업의 등록·등록취소, 측량업자의 지위 승계 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등록취소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국가지명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20 시행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사업시행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94호, 2024. 3. 19. 공포, 9. 20. 시행)됨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전기시설로부터 지역개발사업구역의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시·군계획도로로 분리되는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은 해당 지역개발사업구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자 등이 그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정하는 한편,**

지역개발사업의 전문화 및 다각화를 위하여 **한국도로공사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15 시행

해양수산신기술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 개정(법률 제1972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로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해양수산신기술을 적용한 제품 또는 시설로서 해당 제품 또는 시설의 성능 및 품질이 같은 종류의 다른 제품 또는 시설과 같거나 그보다 우수한 경우로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확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해양수산부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5-05-01 시행 예정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항만 재개발 관련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중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에서의 항만 재개발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내용으로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19호, 2023. 10. 31. 공포, 2025. 5. 1. 시행)됨에 따라,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항만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준공확인 등에 관한 권한 주체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도시사를 포함하는 ‘관리청’*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관리청: 항만 재개발에 관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의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시사를 말함

금융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2024-09-10 시행

현행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은 2024년 8월 31일까지만 적용되어 그 존속기한을 연기하지 않을 경우 1998. 4. 1. 시행된 법률 제5492호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한도 규정이 적용되어 예금보험료율이 현행보다 낮아져 예금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우려가 있는바, **예금보험기금의 안정적인 운영과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위하여 예금보험료율 한도 규정의 존속기한을 2024년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기함**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15 시행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이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신탁·예치 등의 안전한 방법으로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선불업자에게 행위규칙 준수의무를 부과하며,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경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9734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및 방법, 소액후불결제업무에 관한 행위규칙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 확대 (현행 제3조 삭제)

-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요건으로 하는바, 발행인의 범위에서 ‘발행인과 모회사·자회사 등의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제외함으로써 이용자가 발행인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전자지급수단도 이 법의 규율을 받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함

②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및 운용방법 (제13조의2 및 제13조의3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하여 신탁 등의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도록 함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선불충전금을 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거나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을 직접 운용할 때에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예치하거나 국채·지방채를 매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함

③ 선불충전금의 예외적 양도사유 (제13조의4 신설)

- 선불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흡수합병되거나 다른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신설합병함에 따라 그 합병에 의하여 존속되거나 신설되는 회사에 선불충전금을 양도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함

④ 이용자에 대한 선불충전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13조의5제2항 신설)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이 이용자의 청구에 따라 선불충전금을 우선하여 지급할 때 그 지급 금액은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한도로 하여 선불충전금의 총액을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의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이용자별 선불충전금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은 선불업자로부터 이용자 식별 정보 등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고, 선불충전금의 지급 사유·시기 및 방법 등의 사항에 대한 선불업자의 공고 절차를 거쳐 선불충전금을 이용자에게 우선하여 지급하도록 함

⑤ 선불충전금 별도관리의 기준 및 방법 (제13조의6제1항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을 자기재산과 구분하도록 하고, 점검일을 기준으로 실제 별도관리되어 있는 금액이 선불충전금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점검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그 부족한 금액을 추가하여 별도관리하도록 함

⑥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고지내용 (제13조의7제1항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충전금의 별도관리 방법,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의 명칭, 선불충전금 지급사유, 이용자의 청구방법 등 선불충전금 보호조치의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⑦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등록 면제기준 (제15조제5항)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이 각각 '30억원' 및 '500억원' 미만인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⑧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 요건 (제22조의2제1항 신설)

-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선불업자는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고, 전문인력 및 물적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춘 주식회사로 한정함

⑨ 소액후불결제업무 겸영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22조의3 신설)

-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는 '소액후불결제업무의 이용대금에 대한 이자를 이용자로부터 받는 행위', '소액후불결제업무를 신용카드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함

⑩ 선불업자의 행위규칙 (제22조의4 신설)

- 선불업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타인이 발행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예금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함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24-09-15 시행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서 소액후불결제업무*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소액후불결제업무를 겸영하는 선불업자’를 금융상품판매업자의 범위에, ‘소액후불결제’를 금융상품의 유형 중 대출성 상품의 범위에 각각 추가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급을 위하여 하는 업무로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분에 대하여 선불업자 스스로의 신용으로 가맹점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업무

2.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명	예고 법령안	의견접수기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12. ~10.22.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최초로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동 기간을 7년까지 적용하는 한편,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택시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사후환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그 환급절차 등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하는 경우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코스피 또는 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까지 확대함
- 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사회보험료를 계산에 적용되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에 2분의1을 곱한 수로 함
-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추정요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세액추징 제외사유 및 중도해지 사유를 추가함
- ④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대상자를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간이과세자로 정하고, 환급대행자에 택시조합을 추가하며, 직접 또는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함
- ⑤ 신성장·원천기술 연구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기간에 대한 일몰이 존재하므로 신성장·원천기술의 세부 기술 규정은 일몰을 삭제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전화: 044-215-4131, 팩스: 044-215-8063)

기획재정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12. ~10.22.
-------	-----------------	------------------------

공공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이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12.
~10.22.

근로자의 복리후생 제고를 위해 사업자가 소속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설날·추석 등 관련 재화의 범위를 두 가지 경우로 구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설날·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의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던 것을 **설날·추석과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재화의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과 \(전화: 044-215-4326, 팩스: 044-215-8068\)](tel:044-215-4326)

기획재정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12.
~10.22.

저출생 대응을 위해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확대하고,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9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한편, 소형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함
- ②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미분양 매입확약을 체결한 후 2025년 12월 31까지 착공 신고한 경우의 공시가격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함
- ③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소형 신축주택의 취득시기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2, 팩스: 044-215-8066\)](tel:044-215-4312)

문화체육관광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13.
~10.2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4차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2024~2028)」에 따라, 연도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고,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감독·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와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하는 등 분과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한편,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있는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여유분을 사행산업 건전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함

한편,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법률 제19482호)」개정(2023.6.20.)에 따른 관련 조문의 문구 및 인용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 주기 변경 (안 제2조 제2항)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 건전화 평가 등에 대한 유병률 반영 요구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2년마다 한번씩 실시하고 있는 사행산업 업종별 실태조사의 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여 연도별 정책 수립 및 평가의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② 분과별 위원회 개편 (안 제4조 제1항)

- 사행산업 업종별 특수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 및 사회적 이슈인 불법사행산업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조사·연구·홍보 분과위원회를 폐지하고 현행 감독·감시 분과위원회를 사행산업감독 분과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 분과위원회로 분설함

③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 주기 규정 (안 제8조의2 신설)

-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도박과 관련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통계 생산과 국가승인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 도박 관련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함

④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15조 신설)

- 법 제10조에 따른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가 범죄경력자료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⑤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 변경 (안 별표)

- 현재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조정 시 외국인 카지노업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그 실효성에 대해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외국인 카지노업을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통해 발생하는 여유분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유인기제로 활용하는 등 사행산업 매출액 규모에 관한 총량 적용의 예외 및 조정 기준을 변경함

※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총괄과 (전화: 02-3704-0517, 팩스: 02-3704-0519)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4.09.13.
~10.23.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사용자가 직접 발전하여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해 사업장에 설치하는 설비로 대표적인 분산전원에 해당함. 한편,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연간 발전량의 50% 이내에서 전력시장 거래를 허용중이나, 발전기 대형화 추세에 따라 사실상 발전사업이 될 우려가 있으며, 지역단위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전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지역단위에서 에너지 생산·소비 취지의 분산전원에 부합하도록 자가용전기설비의 외부거래 비율을 개선하고자 자가용전기설비의 전력시장 거래 가능 전력량을 연간 총 발전량의 50%에서 30%로 설정함**

※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 (전화: 044-203-3907, 팩스: 044-203-4756)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4.09.10.
~10.21.

최근 전기자동차 대형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전기자동차에 장착된 구동축전지와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제조사등이 자동차를 판매할 때 구매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 부품의 형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자료 및 자동차제원표에 구동축전지 및 구동축전지 셀의 정보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044-201-3840, 팩스: 044-201-5584)

해양수산부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제정안

2024.09.10.
~10.21.

해양을 이용하고 개발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그 규모가 커지면서 해양환경 오염과 해양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커지고, 기존 해양이용자와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해양 이용·개발 행위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후관리가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분야 환경성 검토 제도를 분법하여 사후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이 제정(법률 제19910호, 2024. 1. 2.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목적 (제1조)

- 시행령 목적

② 해양이용협의의 대상 및 절차 (제2조~제5조)

-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를 규정하고 협의서 전문검토기관을 지정함

③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결정 심의, 평가서 초안 및 의견수렴 (제6조~제1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심의회 구성, 관계 행정기관의 장, 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기간 등 방법, 이해관계자의 의견제출 방법, 설명회·공청회 개최 및 생략 기준, 중요 사항 변경에 대한 의견제청취 기준

④ 해양이용영향평가평가서의 작성 및 협의 (제13조~제19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요청 시기, 평가서 전문검토기관, 의견통보기간 및 이의신청, 재협의 대상, 해양환경보전방안 내용 및 검토, 협의의견 관리대장 작성 예외 대상

⑤ 평가서 작성 대행, 사업수행능력평가 및 평가대행자 선정 사업 (제20조~제22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및 해양환경영향조사서 작성 분리 대상, 사업수행능력 평가 기관 및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⑥ 정보지원시스템, 전문인력 양성기관 (제23조~제24조)

- 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위탁,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 신청 서류

⑦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고유식별정보 (제25조~제27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사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가능 사무

⑧ 과태료 부과기준(제28조)

- 과태료 부과기준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mailto:해양수산부_해양보전과) (전화: 044-200-5809)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2024.09.09.
~10.21.

해양레저관광의 진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양레저관광자원을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고 해양레저관광을 위한 활동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해양레저관광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동시에 국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레저관광진흥법」이 제정(법률 제20178호, 2024. 1. 30. 공포, 2025. 1. 31. 시행)됨에 따라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를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해양레저관광의 정의 (안 제2조)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정의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유람선, 관광잠수함을 이용한 활동, 해양유원지 및 테마파크 등을 방문하는 활동을 말함

②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종류 (안 제3조)

- 해양레저관광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진흥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세부 산업을 구체화하기 위해 낚시산업, 마리나산업, 수상·수중레저산업, 어촌관광활동 관련 산업, 크루즈산업, 해양치유산업 등 산업의 종류를 규정함

③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등 (안 제4조)

- 해양레저관광 종합계획에 해양레저관광산업의 육성·발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해양레저관광 상품 개발의 확산·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함
-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와 시·도지사 등 협의를 거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법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영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등을 말함

④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의 시행 등 (안 제5조)

-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레저관광진흥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시행해야 함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⑤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 (안 제6조)

- 해양레저관광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해양레저관광 관련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종합계획에 부합하는 `그 밖에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상레저안전관리 기본계획, 갯벌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말함

⑥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안 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의 범위에는 해양관광산업 사업체 현황, 사업체 고용현황, 사업 활동 현황, 해양관광 정책수요 등을 포함
-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방법은 서면 또는 대면으로 조사하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음

⑦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등 (안 제8조)

- 해양레저관광 분석에 필요한 기술수준과 전문성 보유, 박사급 전문인력 확보, 조사·연구·평가 등의 수행 실적 보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과 보급에 필요한 조직, 인력, 재정능력 등을 갖춘 법인을 전문기관으로 지정 가능
- 전문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신청기관의 업무수행 능력, 전문인력 보유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지정 신청서에 지정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⑧ 해양레저관광 협회의 정관 (안 제9조)

-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내용,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문의처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tel:044-200-5274) (전화: 044-200-5274, 팩스: 044-200-5258)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담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2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2.20. 공포, 2025.2.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환자 치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없어 업계가 생산을 기피하는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담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 규정 (안 제17조의2 신설)**

- 「약사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의 부담이득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규정

②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부과 한시적(2년) 제외 (안 별표 제1호나목4) 신설**

- 퇴장방지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 납부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하여 업계의 부담을 경감

③ **「약사법」 개정(법률 제20328호, 2024. 2. 20.)으로 재심사가 폐지되고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제도가 위해성 관리제도로 통합됨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안 별표 제2호다목1)**

※ 문의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전화: 043-719-2719, 팩스: 043-719-2700)

3. 법률 발의 및 제출안 *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024-09-09 발의
-------	---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퇴직한 임직원이 금융관계법령상 제재조치 통보를 받은 경우 금융회사 임원취임이 제한되고 있음

「은행법」, 「보험업법」 등 다른 금융관계법령과 달리 이 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는 제재조치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해당 임직원이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있음

이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후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금융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내용을 통보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제재조치를 받기 전 퇴직한 임직원에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상 금융회사 임원취임 제한을 적용받게 함으로써 이 법에 따른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15조의3 신설)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3인)	2024-09-09 발의
-------	---	---------------

현행법은 가맹지역본부를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가맹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맹지역본부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주된 보호 대상을 가맹점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지역본부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에 법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 대하여도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지역본부를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등 12인)

2024-09-09 발의

현행법은 2023년 10월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이 조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원자재값으로 보기 어려운 경비 중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의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게 되더라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하도급대금 중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료의 비중이 높은 업종의 경우에는 해당 비용이 급증하더라도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보호를 받지 못해 수급 사업자의 어려움을 구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에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인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으나, 부당한 특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무효를 확인받기까지 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하므로 수급사업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는 여전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하도급대금의 조정 대상이 되는 ‘주요 원재료’를 재료비뿐 아니라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 등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비용을 포함하는 ‘주요 재료비등’으로 개정하고 부당한 특약은 그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하도록 함으로써 수급사업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2조 제16항·제17항 및 제3조제2항3호, 제3조의4제3항 신설 등)

정무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4인)

2024-09-09 발의

최근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부 대형 온라인플랫폼들이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해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는 행태를 보이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의 성패를 가르는 이용자 수를 확보하기 위해 자사우대, 끼워팔기, 최혜대우 요구 등의 불공정 행위에 나서고 있고, 이는 소비자, 플랫폼 종사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막대한 피해로 귀결되고 있음.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자율규제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사이에 티몬·위메프 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입점 소상공인들은 1조 원이 훨씬 넘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독과점 배달업체들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으로 소상공인들과 배달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음

이미 유럽연합(EU)나 일본, 호주 등 주요국들도 기존 법 개정 대신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법안을 제정하거나 제정을 추진하고 있고, 최근 미국 법원은 세계 최대 검색 플랫폼인 구글을 독점 기업이라고 판결한 바도 있음

기존의 법률로는 디지털 시장에서의 온라인플랫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어려워 플랫폼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법안을 마련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제하고, 공정한 전자상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온라인플랫폼 시장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정무위원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2024-09-10 발의

해외 직구의 규모가 급속히 늘어남과 동시에 소비자 불만 및 분쟁 건수가 증가하면서 국내에 주소·영업소가 없는 해외 온라인판매사업자의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을 적용하도록 역외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 국내 주소·영업소가 없는 온라인판매사업자(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자 함 (안 제3조의2 및 제20조의4 신설)

또한 현행법은 통신판매중개자와 통신판매업자 간 판매대금 정산기한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통신중개업자에 따라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판매대금 정산기한이 짧게는 1일에서 길게는 70일까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통신판매업자가 마땅히 정산받아야 할 판매대금이 통신판매중개자의 사익추구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등 법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어 왔음

이는 피해액이 최소 1조 3천억원에 이르는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고, 영세 소상공인 등을 비롯한 사업자는 판매대금을 정산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로부터 의뢰받은 판매대금의 정산 주기를 구매확정일 또는 반품 및 교환이 완료되어 소비자의 주문이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3영업일 이내로 설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하면 지연이자를 내도록 해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20조의5 신설 등)

한편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는 그 특성상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시적인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고, 소송을 통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임

이에 공정거래법 등에 도입되어 있는 동의를결제도를 도입하고, 동의를결제도의 실효성 담보를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신설 등)

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4인)

2024-09-10 발의

현행법은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신청을 한 것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맹점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를 구성하여 가맹본부에 대하여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 요청을 하는 등 가맹점사업자단체와 관련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해당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가맹본부가 보복조치를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단체 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그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가맹점사업자를 폭넓게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12조의5제1호 신설 등)

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등 10인)

2024-09-10 발의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특정한 경우에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규정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 관련 법령에 의한 처벌 여부 등 형식적인 요건 위주로 열거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부실 우려 등 금융거래 질서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다소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변경신고 과정에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방지하거나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특정 개선사항을 요구하여야 할 경우에도 신고를 수리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는 조건을 붙일 수 없었음

이에, 이 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 신청서나 그 밖의 첨부서류에 거짓이 있거나 필요한 내용을 적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신고를 불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수리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방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금융거래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가상자산시장의 건전성 확보 및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 신설 및 제7조제10항 신설)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9-11 발의

현행법에서는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를 위한 규제로서 기업집단의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여 기업집단 현황, 대규모내부거래의 주요 내용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일정액으로 삼다 보니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실이 초래되고 있음. 실제 현행 지정기준이 도입된 2009년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가 48개 이던 것이 2024년에는 88개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2020년 12월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을 자산총액 기준 10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에서 국내총생산액의 0.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한 것과 같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도 국내총생산액과 연동되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0.25%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정함으로써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규제의 탄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31조제1항 및 제6항)

정무위원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의원 등 10인)

2024-09-11 발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 단체가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 하지만 표준약관 사용이 권장사항에 불과해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는 계약 시 불공정한 조건을 강요받는 등 불이익을 받고 있음

이에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 등의 경우 약관을 사전에 인증받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한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그 사실 및 주요 내용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안 제19조의3제7항 신설)
- ② 시장지배적사업자 등 계약에 있어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을 사전 인증받도록 함 (안 제19조의4 신설)

정무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민국의원 등 12인)

2024-09-13 발의

2023년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최초로 예비인가가 부여됨에 따라, 조만간 우리 증권시장이 경쟁체제로 전환될 예정임.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는 이미 다수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영업 중에 있으며,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정착에 따라 증시의 거래량을 증대하고 투자자의 거래편의를 증진하는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 바 있음.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원활히 출범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한 최선집행의무 미적용 (안 제78조제2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는 통상의 투자중개업자와 달리 투자자의 주문을 직접 전달·집행하지 않으므로, 최선집행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함

② 공개매수 적용대상 정비 (안 제133조제1항)

- 공개매수 관련 규정이 증권시장과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비함

③ 손해배상공동기금 활용범위 명확화 (안 제394조제1항)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래소의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

정무위원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1인)

2024-09-13 발의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등의 이유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원사업자가 대기업인 경우가 많아 고질적으로 부당 하도급에 대해 실제로 판결이 나는 경우가 매우 적으며(2016년~2020년 10월까지 2건 판결). 적용되는 손해배상액은 평균 1.5배로 실효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부당한 하도급 거래에 대한 원사업자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그 손해배상액으로 정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하도급거래를 한 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액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급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35조제2항 및 제3항)

전 지구적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세계 각국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도입 등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정부와 국회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이를 위한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2010년에 기후위기 및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문제에 관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목표설정과 조치의무를 명문화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2021년에는 이를 보완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명문화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새로 제정하였음. 두 법률은 공통적으로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2010년 6억 5,600만톤에서 2018년 7억 2,700만톤, 2021년 6억 7,660만톤으로 지난 15년간 오히려 증가세를 보임. 이러한 원인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세제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실효세율의 절반 수준이며, 과세대상도 화석연료 일부만 포괄하는 등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온실가스의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대상을 최대한 빠짐없이 포괄하고 탄소 배출량에 적정 세율로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개편·강화하여야 함

한편,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면 시행하는 등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에 대한 무역장벽 체계가 들어서고 있어 우리나라 수출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도 탄소세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임

이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억제에 효과적인 방안인 탄소세를 신설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및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은 최소화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탄소세 세율을 탄력적으로 높여 2050년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를 극복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휘발유, 석유가스, 석탄과 같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 등을 에너지 자원, 제조업 원재료, 운송수단 연료 등에 사용하는 경우 탄소세의 과세물품으로 함 (안 제2조제1항 및 제2항)
- ② 탄소세의 과세표준은 물품에서 배출하는 단위당 온실가스 배출량(1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환산한 것)을 물품의 수량으로 곱한 것임 (안 제6조)
- ③ 탄소세의 세율은 1 이산화탄소상당량톤당 8만원으로 함 (안 제7조제1항)
- ④ 과세물품을 제조하는 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되,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및 제20조)
- ⑤ 미납세 반출과 수출 및 군납·외교관·조건부·무조건 면세를 규정하여 탄소세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 ⑥ 유상으로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하여 탄소세를 대납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제3항)

- ⑦ 제조장을 사실상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의 영업을 포괄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인이 피승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함 (안 제23조)
- ⑧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탄소세의 납세 보전을 위해 단속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 세무공무원은 탄소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질문이나 검사를 할 수 있고, 납세보전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 (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1인)

2024-09-12 발의

현행 「악취방지법」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이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저감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임의적 규정이므로 한정된 예산으로 이를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영세한 기업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의 부담으로 인해 악취저감시설 확충이 더디며, 인근 지역의 악취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

이에 악취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및 악취관리지역에서 악취를 배출하는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악취 배출 사업장의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독려하려는 것임 (안 제25조의8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8인)

2024-09-13 발의

최근 경제 상황은 견조한 수출 호조 중심의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나,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음. 따라서, 경제 회복 흐름이 취약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회복 가속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 외에 그 한도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비를 촉진하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임 (안 제136조제6항)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의원 등 10인)

2024-09-19 발의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불리는 국내 증시 저평가를 해결하고 증시 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기업의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와 자본시장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기업 배당 등 주주환원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나, 현행법상 배당금 증가 기업에 대한 세제 특례가 부재한 상황임. 따라서 배당금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대하여 배당금액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100조의33 신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024-09-19 발의

현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경영과 투자를 지원하면서, 국가전략기술과 같은 특정 분야에 관하여는 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기후변화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녹색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 대상 업종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추가하고,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사업을 하는 경우 특례의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함 (안 제7조제1항)
- ②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녹색기술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다른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안 제10조제1항 등)
- ③ 녹색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거나 해당 법인으로부터 녹색기술을 양수하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에의 출자 또는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의3제3항)
- ④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투자 관련 공제율을 다른 투자에 대한 공제율보다 상향시키고, 녹색기술 관련 자산 투자에 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포함시킴 (안 제24조제1항 등)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09-09 발의

현재 앱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표시하고, 해당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순위 산정에 사용되는 매출액, 판매실적 등의 지표들은 누적지표에 해당하여 현재 유행하는 모바일콘텐츠를 알려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고, 일부 게임들처럼 고액 과금을 조장하는 경우 순위 왜곡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이에 앱마켓사업자는 자신이 거래를 중개하는 모바일콘텐츠 등에 대하여 매출액, 가격, 판매실적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자체적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최근 1주일 간 해당 모바일콘텐츠 등의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순위를 함께 표시하도록 하여 앱마켓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9제2항 및 제4항 신설)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09-12 발의

최근 문제의 해결 혹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결과물을 이끌어내는 전산상의 연산, 논리, 규칙 또는 절차인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 재화, 서비스 등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확산되고 있음

이와 함께 아동의 스마트폰 보유율이 증가하고 디지털 콘텐츠 소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동이 알고리즘을 활용한 추천 정보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와 중독성 정보로 인한 과몰입·중독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이에 아동 대상으로 하는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와 맞춤형 광고,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보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정보통신망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안 제42조의4 신설 등)

문화체육관광
위원회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의원 등 10인)

2024-09-09 발의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공연의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등을 부정판매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여 이른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 5명 중 1명은 암표를 구매한 경험이 있다고 답하는 등 정상적으로 공연을 관람하려는 일반 국민의 큰 불편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음

이는 온라인 상거래를 통한 공연 입장권등을 대량으로 매매하여 원래 판매 가격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인 ‘암표 거래’의 방법이 나날로 발전하고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임.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에서는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고 있지만 암표 업체들이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음

또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학생 및 젊은 연령층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는 방법의 티켓 사기 및 입장권 부정판매 피해가 속출하고 있음. 나아가 불법 행위로 탈취된 개인정보가 중고거래 사기 등 2차 범죄에도 활용되면서 연쇄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입장권등의 판매단계에서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 방법을 통해 암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공연기획사, 예매처 등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임

한편 최근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인식, 안면 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는 바, 공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하여 암표 목적의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는 자는 입장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고자 함 (안 제42조의2제3항 및 제43조제1항제1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정진욱의원 등 15인)

2024-09-09 발의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를 통해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루려고 함. 더불어 국가의 신성장전략사업으로 전력사용량이 큰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산업 및 데이터 산업 육성 등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도모함. 이를 위해서는 고품질·대용량의 전력망이 신속히 구축되어 전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필요가 있음

현재,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전남, 전북, 충남, 경남 등 지방에 밀집되어 있는 반면에 전력 소비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장거리 송전선로의 확충에 대한 부담과 전력망 건설에 따른 지역주민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음

현행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중심의 전력설비의 확충은 대규모 전력수요와 늘어나는 재생에너지 발전원의 공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하고, 입지선정 관련 주민수용성의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력망 설비 확충에 필요한 정부의 조직과 인·허가 절차,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 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토지보상 및 주민지원 사업 개선 등 국가가 전력망 개발사업을 주도하여 사업시행자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직결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적기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은 에너지부문 탄소중립 이행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를 적기에 확충하여 전기의 안정적 공급과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고, 국가와 사업시행자는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가 설치되는 지역의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 (안 제4조)
- ③ 이 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확충과 개발사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5조)
- ④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확충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을 위한 국가기간 전력망확충 실무위원회를 둠 (안 제6조 및 제7조)
- ⑤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을 위한 기초조사, 실시계획의 수립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신청하기 전에 실시계획을 공고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함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⑥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각종 인·허가등의 의제,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의 입지선정에 관한 특례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의 생산량이 많은 입지의 우대, 「환경영향평가법」 및 「자연재해대책법」 관련 특례, 그리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이후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건축물의 설치, 작업장, 진입로 등의 특례를 둠 (안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 ⑦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규제개선을 지원하고, 개발사업 관련 토지등의 사용과 이에 대한 보상 및 지원에 관한 특례를 두며, 개발사업구역 주변지역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별지원 및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원활한 사업참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 ⑧ 그 밖에 토지 등의 매수업무 등의 위탁, 정보공개, 권리·의무의 승계, 권한의 위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등을 규정함 (안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허중식의원 등 12인)

2024-09-09 발의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이행하기 위하여 2021년 9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고,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할 계획을 수립함

그러나,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는 국가 전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발전소 주변 지역 대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주는 것이 분명하나, 석탄화력발전소와 관련된 산업체 및 폐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이에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지하는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 사업자 및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 및 대체산업을 육성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침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 생활 향상 및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이 법의 목적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해당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과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의 고용안정과 지역경제 진흥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안 제1조)
- ②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관련사업자 및 대체산업을 정의함 (안 제2조)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안 제5조)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 등을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 또는 알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및 제7조)
- ⑤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8조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봄 (안 제8조)
- ⑥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계획을 지역개발계획에 반영하도록 함 (안 제9조)
- ⑦ 폐지지역 대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우선 지급하며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고용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함 (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⑧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 (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 ⑨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관련사업자에게 경영자금 대출상환유예·기한 연장·이자지원 등을 지원하도록 함 (안 제16조)
- ⑩ 폐지지역에 공공시설 등을 우선 설치하고,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조세·부담금 감면 관련 특례를 규정함 (안 제17조부터 19조까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2인)

2024-09-11 발의

현행법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보호하고 유출을 방지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국가핵심기술 등록·관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직권으로 대상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등록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등 국가핵심기술의 등록·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산업기술침해행위의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를 배상액의 상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함으로써 산업기술침해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등록제를 도입하고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산업기술침해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여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 ①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이하 “기업등”이라 함)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판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판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2 신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관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의3 신설)
- ③ 대상기관의 계약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자가 산업기술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를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행위에 포함하도록 함

(안 제14조제2호의2 및 4호의2 신설)

-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업기술 침해신고를 받은 경우 침해신고와 관련된 기관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7조제3항)
- ⑤ 법원은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에서 5배로 배상액 상한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의2제2항)
- ⑥ 판정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와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9조제1호·2호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4인)

2024-09-11 발의

현행법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는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점포등의 입지 선정과 건축단계 이후 등록단계에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과 관련된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중소상인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개설 이후 제출했던 지역협력을 미이행하는 등 지역상권과 갈등이 발생해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조치 근거 미비로 사실상 지역상권 붕괴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등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상권 붕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특별자치시·시·군·구 인접 지역에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하려는 경우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접 지역에도 제출하도록 함 (안 제8조제5항)
- ② 지역협력계획서의 공간적 작성 범위는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 범위와 동일하며 일부가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에 속하여 있는 경우 해당 지역을 포함하여야 함 (안 제8조제8항 신설)
- ③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시 대상 업종은 해당 대규모점포등에 입점이 계획된 업종을 포함하며, 지역협력계획서는 상생협력, 고용활성화 등을 포함해야 하며 그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해 공표함 (안 제8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5항 신설)
- ④ 상권영향평가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대행하도록 함 (안 제8조의4 신설)
- ⑤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가 등록한 사실과 다르거나 변경등록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1조의2 신설)

- ⑥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했거나 이를 보관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52조제3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등 11인)

2024-09-13 발의

현행법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의 하나로 기업의 설립이나 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규정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은 이에 해당하는 자로 변호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등 일부 직종이나 관련 면허를 가진 자를 열거하고 있음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령은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을 지나치게 한정하고 있어, 실제로 벤처기업의 설립과 성장에 기여하였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도록 하여, 벤처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의 스티브 잡스가 자문역으로 와도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외부전문가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전문가들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을 예외적으로 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의 경영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3제1항제3호)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의원 등 10인)

2024-09-19 발의

현행법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일자와 시간을 정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지자체단위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상공인 보호와 노동자 건강권 보호라는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견해가 있음

또한, 아울렛·백화점·면세점 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 대규모점포 중에서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중소유통업 종사자 중 상대적으로 여성·저소득·근로자·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가 많은데, 이들에게 오히려 장시간의 주말노동이 집중되어 근로자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백화점과 면세점 등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며, 장시간 근로와 야간 교대제 근무를 축소할 수 있도록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함으로써 대규모점포등의 업태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 제8조의4 및 제12조의2)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024-09-19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발전전력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의 우선 구매규정에 따라 자신의 발전전력을 해당 시점의 전력가격으로 전력시장에 전부 판매할 수 있음. 또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전력공급이나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생산이 확대되면서 전력계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그에 대비할 사전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아 경영상의 손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전력거래소가 출력제어와 같은 변경된 지시를 하려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그 지시의 기준 및 사유 등을 문서로 알려주도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대응력을 높이는 한편, 출력제어 등 변경된 지시의 이행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이를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통해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45조 및 제49조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3인)

2024-09-19 발의

현행법은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는 등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국내 산업단지의 에너지사용량 증가로 인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또한 최근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자발적 약속인 RE-100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확산되고 있는데, 산업단지에도 이러한 기류를 확산시키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에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입주기업체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보급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안 제33조제7항제6호, 제44조제3항, 제45조의2제4항제6호의2, 제45조의21제1항제6호의2 및 제10호의2 신설 등)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2024-09-20 발의

현행법은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생산 또는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해당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위해성심사, 수입승인, 생산승인, 이용승인 등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유전자교정생물체(GEO, Genome Edited Organisms)’는 ‘유전자변형생물체’와 달리 외부 유전자의 주입 없이 유전자가위 등 신기술을 활용해 유전자의 일부를 잘라내거나 교체함으로써 전통육종 또는 자연적 돌연변이 수준의 안전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이에 따라 미국,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과 남미, 인도 등 많은 국가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를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하고 규제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EU도 ‘유전자교정생물체’의 위해 수준에 비례하여 규제가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유전자교정생물체’가 현행법상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범주에 포함되어 과도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양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여 유전자교정기술의 상용화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중 모호한 내용과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유전자변형생물체’와 구분되는 ‘유전자교정생물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유전자교정생물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첨단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2호·제2호의2 및 제3조제2항 신설)

보건복지위원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의원 등 10인)

2024-09-10 발의

희귀난치성 질환의 치료제로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킴리아, 줄젠스마 등 세포유전자 치료제가 국내 시판 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 난치성 질환 치료에 새로운 장을 열고 있음

그런데, 세포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환자의 세포를 채취하여 이를 치료제로 만드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현실임. 또 현재 사용되는 세포유전자 치료제 대부분 해외 제약사에서 개발한 것으로 환자의 세포를 해외로 보내고, 이를 치료제로 제조 후, 다시 국내로 반입하여, 환자에게 시술할 때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주요 수도권 일부 병원을 통해서만 해당 과정이 진행되고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환자들은 원정 치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아울러 국내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과 사용 촉진을 위해서도 선제적으로 세포유전자 치료제를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세포유전자 치료제 제조 기반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첨단바이오의약품을 식약처의 허가받은 기관·시설에서 위탁 제조할 수 있도록** 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여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첨단바이오의약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려는 것임 (안 제23조의 2 신설)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등 10인)

2024-09-09 발의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그 구속력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즉 현행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의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구속력을, 현행법 제36조는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한 지역적 구속력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노동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정형노동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노동기본권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어 현행 지역적 구속력 제도를 지역뿐만 아니라 산업·업종에 대하여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확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편하여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단체협약의 구속력의 확대의 유형을 ‘지역’에서 ‘산업·지역·업종’으로 확대하여 단체협약이 없거나 불리하게 체결된 경우에도 동일 산업·지역·업종에서 동등한 조건의 단체협약이 적용되게 함으로써** 열악한 지위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안 제36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의원 등 10인)

2024-09-10 발의

코로나-19 사태 이후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구조의 변화로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이 확대되고 있음

그런데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등 통신수단을 통해 업무지시를 받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로시간 외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온 업무 관련 전화, 메일 등을 받지 않는 이른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법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5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노사 간 합의를 통해 근로자가 근로시간 이후에 전화, 문자 등 통신수단을 통한 업무지시에 따라 근로하지 않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근로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려는 것임 (안 제53조의2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2024-09-10 발의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자는 연간 3일 이내(최초 1일은 유급)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난임치료는 실시 전 체질개선이나 배란유도 등을 위한 일정 기간의 사전 준비단계를 필요로 하고 있어 현행법이 보장하는 3일의 휴가 기간은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60일로 확대하고 이중 30일은 유급으로 하여 난임치료 전 과정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8조의3제1항 등)

환경노동위원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신장식의원·이용우의원 등 12인)

2024-09-10 발의

현행법에서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이와 같은 방산노동자에 대한 쟁의행위의 전면적 금지가 방산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고, 부당노동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우리나라가 2021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의 보장 협약(제87호),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협약(제98호)을 비준한 조건에서 국제적 기준에 맞춰 방위사업체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단체행동권 제한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를 공익사업에 준하여 제한**하도록 함으로써 방위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단체행동권 제한과 안정적 방산 물자 생산의 균형을 이루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주요방산노동자의 쟁의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삭제**함 (안 제41조 제2항 및 제88조 삭제)
- ②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의 노동쟁의 관련 조정기간 및 특별조정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안 제54조 및 제72조)
- ③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관한 쟁의행위가 방산물자의 조달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여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위험이 현존할 경우 공익사업과 같이 긴급조정 등의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 (안 제76조 및 제77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7인)

2024-09-10 발의

현행법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의 법정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이하 “연장근로등”이라 한다)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되, 연장근로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에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연장근로등에 대한 가산수당의 지급은 가중된 근로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장시간 근로를 방지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임

한편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과 수당을 분리하지 않고 전체 합한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실제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각종 수당 등을 사전에 일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함. 포괄임금계약의 방식은 법정근로시간 제한 및 연장근로등과 같이 현행법의 근로자 보호 취지와 어긋나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음

이러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제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실제로 2020년 고용노동부의 ‘포괄임금제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사업체의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한다고 나타나기도 하였음

이에 **포괄임금계약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의 업무 개시 및 종료 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하고, 해당 규정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포괄임금계약 금지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권과 실질적인 근로시간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 (안 제22조의2, 제50 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등)

현행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이하 “육아·돌봄지원제도”라 한다)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9.7%, 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현행법은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음

이에 육아·돌봄지원제도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한편,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보다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 ②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등에 대하여 다른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 신청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 (안 제29조제5항 신설)
- ③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안 제74조제10항 신설)

현행법 및 「근로기준법」은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휴가 등 일·가정 양립과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하 “육아·돌봄지원제도”라 한다)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육아·돌봄지원제도의 보장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실질적인 활용가능성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2022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 사업체 중 임신기근로시간단축제도 또는 육아휴직제도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19.7%, 20.4%인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현행법은 사업주에게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신분상 또는 근로조건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불리한 처우’는 전보·승진 등의 인사조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인사조치는 사업주의 재량 범위인 영역과 재량범위를 벗어난 불이익 처우 간의 구분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이에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개별 사안별로 판단되고 있는 실정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상 “불리한 처우”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전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아울러 육아·돌봄지원제도의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며, 육아휴직 및 배우자출산휴가 청구에 사업주가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주가 허용한 것으로 의제하는 등 근로자의 육아·돌봄지원제도 사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아동과 양육자에게 친화적인 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불리한 처우”를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 조치’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안 제2조제1호의2 신설)
- ② 사업주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안 제18조의2제1항)
- ③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청구에 대하여 이를 허용한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한 것으로 의제함 (안 제19조제1항)
- ④ 근로자의 노동위원회에 대한 차별적 처우등 시정신청 대상에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등의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포함하도록 함 (안 제26조제1항제3호)

- ⑤ 현행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함 (안 제29조의6 신설)
- ⑥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함 (안 제37조제4항)

환경노동위원회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등 11인)

2024-09-11 발의

현행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고, 녹색기업에 인허가 또는 정기검사 면제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 등 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되는 경우도 있어 녹색기업 지정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사업이나 발전용 화석연료의 채굴·수입·가공·판매의 사업을 하는 기업 및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 및 사업장은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하는 등 녹색기업지정 관련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안 제16조의2제1항 후단 신설 등)

환경노동위원회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4인)

2024-09-12 발의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고용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제성장,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규직의 직접고용에서 비정규직 확대, 기간제·파견·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 등 국내 고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고용형태별 또는 성별 등에 따른 임금 격차 문제로 심각한 상황임

이에 정부가 고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도록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원칙을 명시하고자 함. 또한 사업주가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할 경우 고용형태 현황만 공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무별 고용형태, 근속연수, 직무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하여 고용안정 및 고용평등을 도모하고자 함 (안 제3조 및 제15조의6)

환경노동위원회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김태선의원 등 15인)

2024-09-12 발의

회사의 합병,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은 근로자의 고용, 노동조합의 지위에 큰 변화를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주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그럼에도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의 고용 승계 여부나 노동조합의 지위 문제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이 없어, 근로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관련한 체계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민법」이나 「상법」 등의 해석에 따르거나 법원이 형성한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로인해 기업변동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은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를 도모해야하고, 각 사건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지는 등 비용과 사법 행정력의 낭비는 물론, 예측가능성이 없는 불안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음

과거에 비해 자본이 이동이 활발해 지는 등 사업이전 등 기업변동은 더욱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유럽의 주요 국가들은 이에 큰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관한 지침과 법률을 마련해 고용 문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근로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등 이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한 우리 현실에 시사점을 주고 있음

이에 기업변동에 따른 고용 관계 및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사업장의 소유나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겪는 불안정성을 낮추고자 함

주요 내용으로는

- ① 사업이전 등 및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함을 원칙으로 명시함 (안 제2조 및 제8조)
- ② 사업이전 등을 하는 경우 미리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승계대상근로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함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③ 사업이전 등이 있더라도 기존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상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업이전 등을 이유로 한 해고를 제한함 (안 제12조 및 제13조)
- ④ 사업이전 등이 있는 경우 기존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 승계되도록 함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환경노동위원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9-13 발의

현행법은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상 파견대상업무로 적합한 32개 업종에 대해서만 파견근로자

사용을 상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기업이 예상하지 못한 시장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나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파견근로자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예외 규정을 악용한 불법파견이 만연함에 따라 위험의 외주화가 끊이지 않고 있음. 최근 6월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건을 일으킨 회사의 불법파견 사실이 적발되어 파견근로자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예외규정으로 사실상 전면 허용되고 있는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사용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 파견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5조 및 제6조)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의원 등 17인)

2024-09-13 발의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며,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3년간 기록·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사업주의 자율성에 기반한 위험성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산업재해 예방의 효과가 미비한 상황임. 최근 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이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위험요인을 발견하고도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중대재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출한 평가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결과 산업재해의 위험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령하고,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36조 및 제175조)

국토교통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윤종균의원 등 24인)

2024-09-10 발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과로·과적·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일몰제로 일부 운송품목(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하여 도입되었으나 지난 2022년 12월 31일 연장 없이 일몰됨

그런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과속·과적이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향후 안전운임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기존 안전운임제는 적용 대상이 일부 운송품목으로 한정되어 현장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 안전운임의 현장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되어 있던 “안전운임의 할증 및 적용 방법, 기타 안전운송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부대조항”이 안전운임으로 효력이 있음을 명시할 필요성 제기됨

이에 유효기간 없는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법 취지에 맞게 개선하며, 안전운임 고시에 포함된 부대조항을 심의·의결 및 공포 대상으로 하여 안전운임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안전운임 지급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액수를 높여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증진하려는 것임 (안 제5조의9부터 제5조의15 까지 신설, 제67조제1호의3 신설, 제70조제1항)

또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에서 화물노동자의 소득도 “적정 이윤”이라는 표현 안에 포함되었는데, 화물노동자의 경우 노무제공의 대가임을 분명히 나타내기 위해 “적정 소득”으로 표현하고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 위원 구성 인원을 동수로 법에 명시하여 대표성을 가지는 위원들 숫자의 균형을 분명히 하고자 함 (안 제2조제12호, 제2조제13호, 제5조의9제2항 신설, 제5조의10제2항 신설)

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의원 등 10인)

2024-09-02 발의

최근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자동차 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 페달 오인으로 인한 조작 실수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런데 페달 오인으로 인해 일단 자동차가 급가속하게 되면 운전자 스스로 페달 오인 상황을 인지하여 조작을 정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안전띠 미착용 시 발생하는 경고음과 같이 비정상적인 페달 조작이 있는 경우 경고를 통해 운전자가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일정 수준 이상 조작하는 경우 운전자에게 이를 경고해주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하여, 페달 오인으로 인한 사고 예방 및 사고피해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29조의4 신설 등)

국토교통위원회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권영진의원·손명수의원 등 16인)

2024-09-02 발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해당 개발사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이후 발생하는 분양 수익 등을 통해 자금을 상환하는 구조임. 이러한 방식은 사업자가 초기 자본 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택건설사업 등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그런데 국내 부동산 PF는 낮은 자기자본비율과 시공사의 책임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로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실 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변수에 매우 취약하여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음

2023년 기준 국내 부동산 PF 규모는 약 230조 원에 달하며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금융과 실물경제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부동산 PF 사업과 관련된 재무 자료와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이해당사자 간 갈등 상황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기구의 부존재 등으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개입 및 대응에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임

이에, **부동산 PF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인 부동산개발사업의 관리 및 국민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정보의 취합 (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7조)**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사업을 포함한 모든 개발사업을 ‘부동산개발사업’의 범위로 정하고, 국가·지자체·지방공사 및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도록 함

②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운영 (안 제10조)**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개발사업에 관한 신고·제출, 관련 통계의 생산 및 사업장별 구체적 현황 등 사업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③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민관합동 개발사업 조정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부동산개발사업 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 시 민간 단독 개발사업도 조정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당사자 간 조정안 동의 시 합의 효력을 부여하고, 조정 결과에 따른 공무원 면책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

III. 국회 주간 의사일정(안)

1. 본회의

구분	일시	내용
본회의	9/26(목) 14:00	- 안건 심의

2. 상임(특별)위원회

구분		일시	내용
운영위	전체회의	9/25(수) 10:00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법사위	법안1소위	9/24(화) 10:00	- 고유법 심사
	전체회의	9/23(월) 10:00	- 고유법 상정
		9/25(수) 10:00	- 고유법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정무위	전체회의	9/25(수) 14:00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과방위	전체회의	9/24(화) 10:00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공지능과 디지털 포용 관련 법률안 공청회
국방위	법안소위	9/23(월) 14:00	- 법안 심사
	법안소위	9/24(화)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5(수) 10:00	- 법안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행안위	법안1소위	9/24(화) 10:00	- 법안 심사
	법안2소위	9/24(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5(수) 14:00	- 법안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문체위	전체회의	9/24(화) 10:00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 법안소위	9/25(수) 10:30	- 법안 심사 및 공청회
	전체회의	9/26(목) 10:30	- 법안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산자중기위	전체회의	9/26(목) 10:30	-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복지위	전체회의	9/26(목) 11:00	-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환노위	전체회의	9/26(목) 10:00	- 2024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9/24(화) 10:00	- 법안 심사
	국토법안심사소위	9/25(수) 10: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6(목) 10:00	- 법안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여가위	법안심사소위	9/23(월) 14:00	- 법안 심사
	전체회의	9/23(월) 15:00	- 법안 의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등

IV. 국회 주요 행사(토론회, 세미나, 자료집)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토론회 및 세미나	9/23(월) 08:00	저탄소 대전환 시대, 신·재생에너지는 해답이 될 수 있는가?	김소희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9/23(월) 10:00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방발기금(방송발전기금) 제도 개선 토론회	김장겸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소회의실
	9/23(월) 14:00	[해상풍력발전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 해상풍력특별법, 필요성과 쟁점	김소희·박지혜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9/23(월) 14:00	해외게임사 국내시장 진출과 이용자 보호 : 국내 대리인 제도를 중심으로	강유정 의원실	의원회관 3세미나실
	9/24(화) 10:00	[사회권선진국포럼] 건강권을 수호하라	김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4(화) 14:00	‘국가에겐 선택이지만 우리에게겐 생존입니다’ : 희귀질환 의약품 접근성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	서영석 의원실	의원회관 4간담회의실
	9/24(화) 14:00	첨단 소부장·IT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방산 경쟁력 강화	안규백 의원실	도서관 강당
	9/24(화) 14:00	탄소중립의 미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정진욱·김원이 의원실 등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실
	9/24(화) 16:30	INC-5 앞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우리나라 정부의 대응 전략 점검과 과제를 모색한다	이학영·강득구 의원실 등	의원회관 6간담회의실
	9/25(수) 14:00	플랫폼 독점화에 따른 문제점 및 해결방안 세미나. 3차 : 경제적 약자의 모빌리티 증진방안	박정 의원실 등	의원회관 3간담회의실
	9/25(수) 15:00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개정 토론회 : 초등학교 교구 물품, 어린이제품 추가 및 관리 확대 필요성	장철민 의원실 등	의원회관 5간담회의실
	9/26(목) 09:30	제약바이오산업의 AI 대전환	최수진 의원실 등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9/26(목) 13:00	국방연구개발 체계 발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강선영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9/26(목) 13:30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입법과제 토론회	김한규·권향엽 의원실 등	의원회관 7간담회의실
	9/27(금) 07:30	금투소득세와 금융시장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연속세미나. 2차 조찬세미나	박찬대 의원실 등	의원회관 10간담회의실

	9/27(금) 10:30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예상쟁점과 대응 방안 국회토론회	윤후덕·김병주 의원실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자료집 등	9/23(월)	「The 현안」제28호 발간 - 주요국 의회 지도부	국회도서관	
	9/25(수)	「금주의 서평」제696호 발간 - 도서명 : 폭염 살인 - 저자 : 제프 구델		
	9/25(수)	「Data & Law」2024-10호 발간 - 데이터로 보는 전기자동차		
	9/26(목)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발간	국회예산정책처	
	9/27(금)	「2024 대한민국 지방재정」발간		
	9/23(월)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07호 발간 - 표제 : 정치 양극화의 실태와 개선방안	국회미래연구원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 지난 호 세종Law Focus(제252호) 중 국회 주요 행사 관련 자료 첨부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일시	내용	주최	장소
자료집 등	9/11(수)	「이달의 입법민원」 (2024.8월호)	국회사무처	
	9/12(목)	「최근 현재결정과 개정대상 법률 현황(제2024-7호)」		
	9/10(화)	「최신외국입법정보」제255호 - 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 기본법 개정	국회도서관	
	9/11(수)	「The 현안」제27호 - 인공지능시대, 혁신과 규제의 AI 입법례		
	9/11(수)	「금주의 서평」제695호 - 도서명 : 물리학자는 두뇌를 믿지 않는다 - 저자 : 브라이언 키팅		

V. 법무법인(유) 세종 주요 뉴스레터 (09.09~09.22)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분야	내용
9/11(수)	ESG	생물다양성 뉴스레터 - 2.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경영: TNFD 핵심 가이드
9/11(수)	에너지·자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
9/12(목)	환경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더욱 강화된 기후대책 예고
9/13(금)	금융	은행 및 금융지주 금융규제 주간 브리핑 - Vol.2 (2024년 9월 2째주)
9/19(목)	건설/부동산	상가 내부에 기둥 2개가 있다는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 등을 구하는 소송의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입법전략자문그룹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그룹(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Group)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문서의 내용(인쇄본 또는 전자문서) 및 이를 이용하여 편집한 내용은 제3자에게 공유하실 수 없으며, 필요하신 경우 법무법인(유) 세종과 미리 상의하여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백대용 | 변호사

[프로필보기](#)



장대섭 | 고문

[프로필보기](#)



김광재 | 변호사

[프로필보기](#)



김성범 | 변호사

[프로필보기](#)



안현정 | 변호사

[프로필보기](#)



방세희 | 변호사

[프로필보기](#)



성재열 | 변호사

[프로필보기](#)



조성환 | 변호사

[프로필보기](#)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